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연명의료 상담 및 등록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02-363-9988, 02-6945-0606

🌐 <http://sdmsenior.or.kr>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